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●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아파트계약용(본인 발급용에 한함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※ 온라인 발급시[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서류제출 및 계약 / 제출처 : 두산건설(주)]
	●		인감도장	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
	●		신분증 (※모바일 신분증 불가)	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※20.12.21.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) 등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“ <b>전체포함</b> ”으로 발급
	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“ <b>전체포함</b> ”으로 발급
	●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 <b>상세</b> ”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 관계확인)
	●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“ <b>상세</b> ”로 발급
	●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국내 거주기간 확인. ※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“Y”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해당자	●		해외체류 증빙서류 (단신부임)	본인	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재직증명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※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
	●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●		복무확인서	본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※ 수도권외 타지역 거주자 해당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
	●		한부모가족증명서		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※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.
	●	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※ 청약신청 전 외국인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함(주택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)
	●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-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-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 <b>상세</b> ”로 발급
	●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 ※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, 연락처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 예정일, 의료기관 직인날인)
●		입양관계증명서		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	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당자		●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 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 ※ 상기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.
		●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 자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<b>"상세"로 발급</b>
		●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다른 등본에 등재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<b>"상세"로 발급</b>
		●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직계존·비속	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<b>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</b>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●		인감증명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(공급신청자 본인 발급용), 대리발급분 불가 ※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※ 온라인 발급시(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서류제출 및 계약 / 제출처 : 두산건설(주))
	●		인감도장		인감증명서와 대조 必
	●		위임장		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●		신분증 및 도장 (※모바일 신분증 불가)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※20.12.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) 등
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	●		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	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·비속	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※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됨.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는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.04.04.(금) 이후 발행분)에 한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'상세'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